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40

발의연월일: 2021. 12. 22.

발 의 자:조오섭ㆍ이병훈ㆍ강은미

윤재갑 · 송갑석 · 문진석

이학영 · 윤영덕 · 주철현

최종윤 • 민형배 • 김승남

김영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5층 규모의 건축물이 해체공사 중에 붕괴되면서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덮쳐 기사와 승객들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재 해당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사고 당일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나오지 않아 해체 과정에 대한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던 점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하는 상주감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 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
	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
	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
	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u>하여야 한다.</u>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